

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. 3. 31 선고 2020가단2087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유한회사

피고1.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진호

2.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우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경일

변론 종결2021. 3. 3.

판결 선고2021. 3. 31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,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[주위적 청구]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2018. 3. 21. 체결된 매매계약을 29,964,50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,964,5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[예비적 청구]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,964,5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의 D에 대한 채권

- 1) E 주식회사는 2016. 6. 2. D에게 40,000,000원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하여 주었다.
 - 이자율 및 이자 지급시기: 연 22.5% 고정금리
 - 여신실행방법 : 여신개시일에 전액 실행
 - 상환 방법 : 매 1개월마다 대출해당일에 분할하여 상환(균등분할방식)
 - 지연손해금율 : 연체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0%, 연체기간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인 경우 연 11%, 연체기간 4개월 이상인 경우 연 12%를 약정이율에 가산
 - 지연배상금율: 연 12%
- 2) 원고는 2019. 6. 25. E 주식회사로부터 D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, E 주식회사는 2019. 7. 2.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D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.
- 3) 원고가 양수한 D에 대한 채권(이하 '이 사건 양수금 채권'이라 한다)의 원리금은 2018. 3. 21. 기준 원금 19,929,013원이며, 2020. 4. 27. 기준 29,964,508원[= 원금 19,921,694원 + 이자 및 연체이자 10,042,814원]이다.

나. D과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

- 1) D은 2000. 7. 19.부터 피고 B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토지'이라 한다)을 1/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.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이 있었다.

2) D은 2018. 3. 21. 피고 B와 사이에, 이 사건 토지 중 D 소유 1/2 지분을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 B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3) 피고 B은 2018. 3. 21.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D 소유 1/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

피고 B은 2018. 6. 11.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총 530,000,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고, 피고 C은 2018. 7. 16.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라.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말소 및 설정

1) 한편,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7. 9. 1. 채권최고액 351,000,000원, 채무자 D, 근저당권자 F조합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'라 한다)가 마쳐져 있었는데, 2018. 7. 16.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.

2)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8. 7. 16. 채권최고액 360,000,000원, 채무자 피고 C, 근저당권자 G조합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, 16, 17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 청구의 요지

가. 주위적 청구 :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

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 있다.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D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며, 수익자인 피고 B, 전득자인 피고 C은 그 사해성을 인식하고 있었다.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들은 가액배상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배상 가액배상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29,964,5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예비적 청구 : 강제집행면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

D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, 피고들은 D과 공모하여 위 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,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.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,964,5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.

3.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성립

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보다 앞서 E 주식회사가 D에게 40,000,000원을 대여한 2016. 6. 2. 성립하였으므로, 비록 원고가 이를 양수한 시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9. 6. 25.이더라도 여전히 피보전채권이 된다(대법원 2012. 2. 9. 선고 2011다71146판결 등 참조)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

1)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고,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.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(대법원 2003. 11. 13. 선고 2003다39989 판결 참조).

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,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,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(대법원 2008. 4. 10. 선고 2007다78234 판결 참조).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,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(대법원 2013. 7. 18. 선고 2012다5643

전원합의체 판결 참조).

2)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.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F조합의 D에 대한 대출금채권이고, D은 채무자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공동담보 중 이 사건 토지 중 1/2 지분과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한 피고 B은 물상보증인에 해당한다. 그리고 피고 B이 D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이상, 이 사건 토지 중 D의 1/2 지분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타당하다.

앞서 본 증거,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,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265,500,000원이고, 이 사건 토지 중 D 지분의 가액은 156,187,000원[= 312,374,000원 × 1/2]이다.

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D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그 지분의 가액을 초과하므로, 이 사건 토지 중 D 지분은 D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.

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.

4.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

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나아가 원고는 피고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D과 공모, 가담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주장을 전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, 피고들의 공모 및 가담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도 손해배상의 액수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.

5. 결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,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,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권은석

별지